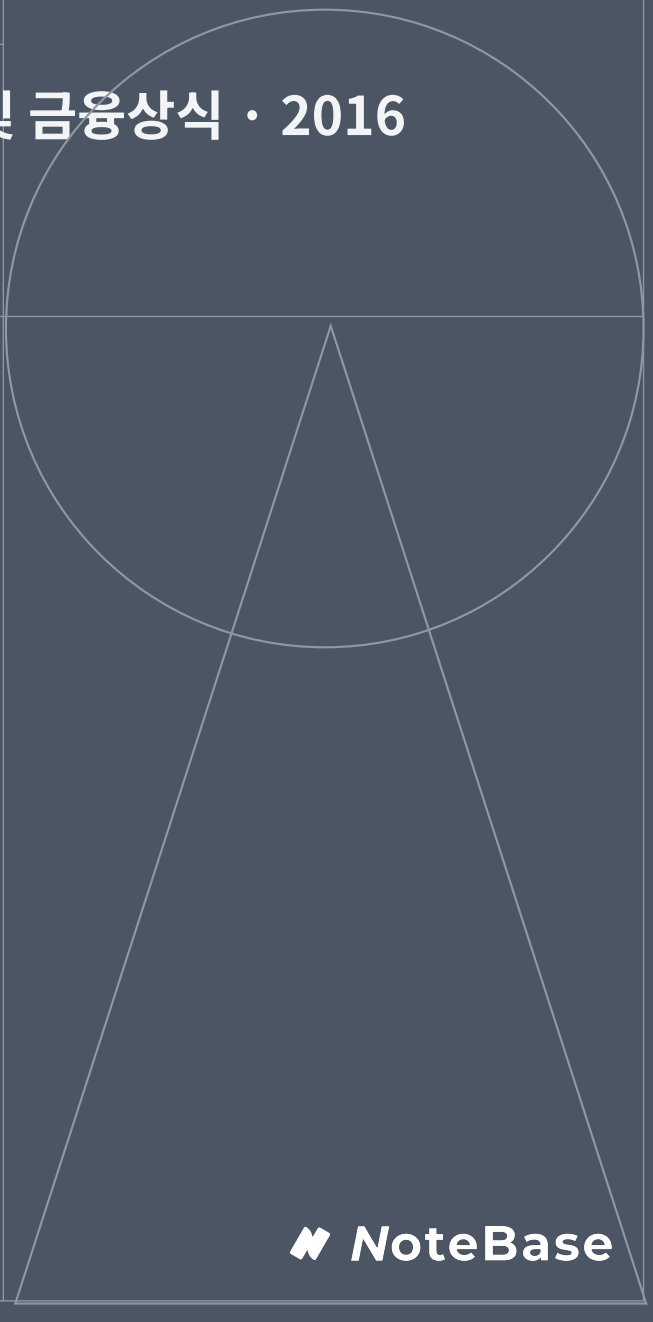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6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6

문 1. <보기>에서 국내우편물 제한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통상우편물의 최대무게: 8,000g
ㄴ. 통상우편물의 최소부피
- ○ 평면의 길이 14㎝, 너비 9㎝
-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 (단, 길이는 14㎝ 이상)

ㄷ. 소포우편물의 최소부피
-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 (단, 가로는 17㎝ 이상, 세로는 12㎝ 이상)
-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 (단, 지름은 3.5㎝ 이상, 길이는 17㎝ 이상)

ㄹ. 소포우편물의 최대부피: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m 이내 (단, 어느 변이나 90㎝를 초과할 수 없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통상우편물의 최대 무게·최소 부피와 소포우편물의 최소·최대 부피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통상우편물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소포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NoteBase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용적 및 중량 안내에 따르면 통상우편물은 최대 무게가 6,000g이다. 최소 부피는 평면형이 가로 14cm, 세로 9cm이고,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23cm이며 길이가 14cm 이상이어야 한다. 소포우편물의 최소 부피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35cm이고 가로 17cm 이상, 세로 12cm 이상이다.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35cm이고 지름 3.5cm 이상, 길이 17cm 이상이다. 최대 부피는 세 변의 합이 160cm 이하이고 어느 한 변도 1m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ㄴ과 ㄷ이 옳고 ㄱ과 ㄹ이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의 '통상우편물의 최대 무게 8,000g'가 틀리다. 올바른 최대 무게는 6,000g이므로 'ㄱ, ㄴ'이 아니라 'ㄴ, ㄷ'이 옳다.
② X — ㄱ은 최대 무게를 8,000g으로 잘못 제시했고, ㄹ은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를 세 변의 합 1m 이내 및 한 변 90cm 이내로 잘못 제시했다. 올바르게는 통상우편물의 최대 무게가 6,000g이고,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세 변의 합 160cm 이하이며 어느 한 변도 1m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ㄱ, ㄹ'이 아니라 'ㄴ, ㄷ'이 옳다.
③ O — ㄴ의 통상우편물 최소 부피 기준과 ㄷ의 소포우편물 최소 부피 기준이 모두 정확하므로 'ㄴ, ㄷ'이 정답 조합이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ㄹ의 '세 변의 합 1m 이내, 어느 변이나 90cm 이하'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세 변의 합이 160cm 이하이고 어느 한 변도 1m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ㄷ, ㄹ'이 아니라 'ㄴ, ㄷ'이 옳다.

오답 포인트

ㄱ의 8,000g을 통상우편물의 현행 최대 무게로 착각하거나, ㄹ에서 '세 변의 합' 제한과 '한 변' 제한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특히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세 변의 합 160cm, 한 변 1m라는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장을 먼저 독립적으로 O/X 판단한 뒤 조합 선지를 고른다. 최소 부피는 통상 평면형 14cm×9cm, 통상 원통형 합 23cm, 소포형 합 35cm로 구분하고, 최대 기준은 통상 무게 6,000g, 소포 세 변의 합 160cm·한 변 1m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통상은 최대 6,000g, 최소 '평면 14×9, 원통 합 23'이고, 소포는 최소 합 35, 최대 합 160·한 변 1m이다.

NoteBase

문 2. 우편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이하 소포우편물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한다.

② 2㎏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은 선택적 우편서비스 대상이다.

③ 일반소포우편물의 송달기준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④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등은 함께 넣어 보낼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선택적 우편서비스의 중량 기준, 일반소포우편물의 송달기준, 소포우편물에 함께 넣을 수 있는 서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시험 당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용어 풀이

보편적 우편서비스 =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우편역무이다. 선택적 우편서비스 = 보편적 우편역무의 범위를 넘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우편역무이다.

핵심 구분

2016년 시험 당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소포우편물 중량 기준은 20kg 이하였고,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은 선택적 우편서비스 대상이었다. 일반소포우편물의 송달기준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였다.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지만 물건과 관련된 납품서·영수증·설명서 등은 함께 넣을 수 있었다.

현재 기준 변화

현행 기준에서도 보편적 우편역무의 소포우편물은 20kg 이하이므로 ①은 여전히 틀리다. 다만 현행 우편법 시행규칙상 일반 우편물의 송달기준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이고,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3일 이내이므로 ③도 틀린 선지가 된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출제하면 ①과 ③이 모두 틀려 단일정답형 문항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2016년 당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포우편물은 20kg 이하였으므로 '30kg 이하'가 틀렸다.
틀린 표현: 30kg 이하 소포우편물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20kg 이하 소포우편물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하고,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은 선택적 우편서비스 대상이다.

② O
2k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 선택적 우편서비스 대상이다.

③ O
2016년 시험 당시 일반소포우편물의 송달기준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였으므로 옳다. 현행 기준에서는 일반 우편물이 4일 이내로 바뀌어 이 선지도 틀리게 된다.

④ O
소포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지만, 동봉한 물건과 관련된 납품서·영수증·설명서 등은 함께 넣어 보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30kg'은 우체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소포의 최대 중량과 보편적 우편역무의 중량 기준을 섞은 함정이다. 또한 ③은 시험 당시에는 옳았지만 현행 송달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리므로 적용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거 법령·규정 문항은 먼저 시험연도의 기준으로 공식 정답을 판단한 다음, 현행 기준에서 중량·기간·대상 범위가 바뀌었는지를 별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소포 보편역무는 20kg 이하이다. 일반 우편물 송달은 2016년 당시 3일 이내, 현행은 4일 이내이고 기록취급 우편물은 3일 이내이다.

NoteBase

문 3. 국내우편요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취급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다.

②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소포우편물은 우편요금 후납우편물의 취급대상이다.

③ 우편요금 별납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④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며 배달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우편요금의 별납·후납·수취인부담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각 제도의 이용 대상, 취급 우편관서, 발송유효기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요금별납은 같은 종류·요금의 다량 우편물을 보낼 때 개별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요금을 한꺼번에 따로 내는 제도이다.
요금후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용자가 한 달 동안 이용한 우편요금을 정해진 기한에 나중에 내는 제도이다.
요금수취인부담은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 우편요금을 부담하도록 계약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편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르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은 요금후납 대상이 되고, 요금별납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우편관서에서 이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요금수취인부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다. 각 우편물에 필요한 부가서비스도 붙일 수 있다.

② O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소포우편물은 우편요금 후납의 취급대상이다. 매월 100통이라는 수량 기준을 충족하므로 옳다.

③ O
요금별납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한 우편관서에서 취급하며, 여기에는 정해진 우체국과 우편취급국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아무 우체국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④ X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 상한을 3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발송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한다.
올바른 표현: 발송유효기간은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의 ‘3년’을 다른 우편 관련 보관기간이나 유효기간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일반적인 발송유효기간 상한은 2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요금 납부 특례 문제에서는 제도별로 대상·최소 통수·취급 관서·기간을 나누어 확인한다.
요금수취인부담의 기간을 묻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는 이용일부터 2년 이내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는 예외가 있다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취인부담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후납의 대표 수량 기준은 매월 100통이다.

NoteBase

문 4.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사서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②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은 우편물을 정해진 날짜에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인 주거지나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③ 우편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계약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제출하면 된다.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용자,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으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사서함의 사용 주체, 변경사항 통보, 계약 신청 절차 및 우선계약 순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공동 사용 금지와 우선계약 순서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편사서함은 이용자가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장과 사용계약을 맺고, 해당 우체국에 설치된 사서함에서 우편물을 수취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따르면 사서함 사용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한다. 우선계약 순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용자 →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경우이다. 같은 규칙 제122조의2는 2인 이상의 공동 사용을 금지하고, 제122조의3은 성명·주소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6

선지별 해설

① X
사서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법인·그 밖의 단체이면 그 소속 직원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해당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지만, 소속 직원의 수령인 등록을 10명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틀린 표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령인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사서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 사용자의 소속 직원 앞으로 온 우편물은 해당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다.

② X
사서함 이용은 다량 우편물을 정해진 날짜에만 찾아가는 제도가 아니다. 특히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이 변경되면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틀린 표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계약우체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③ X
사서함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 별도의 본인 서명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은 현행 신청 절차와 다르다.
틀린 표현: '계약신청서와 …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제출하면 된다'
올바른 표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O
우선계약 순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용자,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의 순서이다. 현행 규정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공동 사용 가능'과 '10명까지'라는 임의의 제한, ②의 '주소변경 시 이용 불가', ③의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 서명표 제출'이 함정이다. 주소 변경은 이용 금지 사유가 아니라 통보 사유이며, 신청서는 사서함이 실제로 설치된 우체국에 제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서함 문항에서는 먼저 공동 사용 여부와 신청 장소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우선계약 순서를 확인한다.
우선계약은 공공성, 이용량, 관할 연관성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서함은 공동 사용 불가, 변경사항은 즉시 통보, 우선순위는 국가·지자체 → 100통 이상 → 관할구역이다.

NoteBase

문 5. 우편물의 발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물의 발송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일반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운송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② 당일특급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자루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③ 부가취급우편물은 덮개가 있는 우편상자에 담아 덮개에 운송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필요 시 묶음끈을 사용하여 봉함한 후 발송한다.

④ 운반차에 우편물 적재 시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에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등기소포 → 일반소포 → 등기통상 → 일반통상 → 중계우편물의 순으로 적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편물의 종류에 따른 발송 우선순위, 운송용기 봉함 방법, 운반차 적재 순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발송 우선순위: 우편물은 특급우편물 → 등기우편물 → 일반우편물 순으로 발송한다.
당일특급우편물: 국내특급우편자루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 앞으로 별도로 묶어 발송한다.
부가취급우편물: 덮개가 있는 우편상자에 담고 국명표를 부착한 뒤 묶음끈으로 반드시 봉함한다.
운반차 적재 순서: 일반소포 → 등기소포 → 일반통상 → 등기통상 → 중계우편물 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일반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를 운송송달증 등록 후 발송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발송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우편물을 특급우편물 → 등기우편물 → 일반우편물 순으로 발송한다.
② O — 당일특급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자루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 앞으로 별도로 묶어 발송하므로 옳다.
③ X — '필요 시 묶음끈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부가취급우편물을 덮개가 있는 우편상자에 담아 국명표를 부착하고 묶음끈을 반드시 사용하여 봉함한 후 발송한다.
④ X — '등기소포 → 일반소포 → 등기통상 → 일반통상'의 순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일반소포 → 등기소포 → 일반통상 → 등기통상 → 중계우편물 순으로 적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한 문장 안에 맞는 내용과 틀린 내용을 섞었고, ③은 '반드시'를 '필요 시'로 바꾸었다. ④는 소포와 통상 각각에서 일반과 등기의 선후를 뒤집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송 문제는 발송 우선순위, 특급의 별도 취급, 부가취급우편물의 봉함, 운반차 적재 순서를 각각 나누어 판단한다. 한 선지에 여러 내용이 있으면 각 문장을 따로 확인하며, 하나라도 틀리면 그 선지 전체를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발송은 특급-등기-일반, 봉함은 묶음끈 반드시, 적재는 일반소포-등기소포-일반통상-등기통상-중계 순이다.

NoteBase

문 6. 국내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관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이다.

②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배달하는 것이 우편물 배달의 일반원칙이다.

③ 우편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 중 익일특급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한다.

④ 배달의 우선순위에서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은 제1순위에 해당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우편물의 배달 원칙,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우편사서함 우편물의 배달 장소 및 배달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보관우편물 = 수취인이 우체국 창구에서 찾아가도록 우체국에 보관하는 우편물이다.
우편사서함 = 이용자가 우체국과 사용계약을 맺고 우체국에 설치된 사서함에서 우편물을 받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규칙」상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이다. 수취인이 2명 이상인 우편물은 그중 1명에게 배달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우편업무 규정」상 배달 물량이 많아 분할 배달할 때 제1순위는 기록취급우편물·국제항공우편물이고, 제2순위는 준등기우편물과 일반통상우편물이다. 우편사서함 번호와 주소를 함께 적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서함에 넣을 수 있으며, 특별송달우편물 등 규정상 주소지 배달 대상만 예외적으로 주소지에 배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관기간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이므로 15일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15일이다.
올바른 표현: 10일이다.

② O
수취인이 2명 이상인 우편물은 공동수취인 전원에게 각각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1명에게 배달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③ X
익일특급우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소지에 배달하는 것은 아니다.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적혀 있어도 원칙적으로 사서함에 넣을 수 있고, 특별송달우편물 등 규정상 예외 우편물만 주소지에 배달한다.
틀린 표현: 익일특급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특별송달우편물 등 규정상 주소지 배달 대상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한다.

④ X
일반통상우편물은 제1순위가 아니라 제2순위에 해당한다. 국제선편통상우편물 가운데 포함되는 대상도 서장 및 엽서이다.
틀린 표현: 제1순위에 해당된다.
올바른 표현: 준등기우편물 및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은 제2순위에 해당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15일과 실제 보관기간 10일을 혼동하거나, ④에서 운송 우선순위와 배달 우선순위를 섞으면 틀리기 쉽다. 또한 ③은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특급우편물이 주소지에 배달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은 기산점과 일수를 함께 확인하고, 배달 우선순위는 제1순위인 기록취급우편물·국제항공우편물과 제2순위인 준등기·일반통상우편물을 구분한다. 사서함 관련 선지는 우편물에 주소가 함께 적혔는지만 보지 않고 규정상 주소지 배달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관 10일, 공동수취인 중 1명에게 배달, 일반통상은 배달 제2순위이다.

NoteBase

문 7. 우리나라에서 국제초특급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국가는?

① 프랑스 ② 싱가포르

③ 일본 ④ 베트남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제초특급우편(EMS TCS)의 발송 대상 국가를 일반 국제특급우편(EMS)의 취급 국가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초특급우편은 정해진 배달 시간을 보장하는 국제우편 서비스로, 이 문항에서 전제한 발송 대상 국가는 일본·싱가포르·베트남이다. 프랑스는 일반 EMS 취급 국가일 수 있지만 국제초특급우편 발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프랑스는 국제초특급우편 발송 대상 국가가 아니므로 발송할 수 없는 국가에 해당한다.
② X — 싱가포르는 국제초특급우편 발송 대상 국가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싱가포르에는 국제초특급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이다.
③ X — 일본은 국제초특급우편 발송 대상 국가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일본에는 국제초특급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이다.
④ X — 베트남은 국제초특급우편 발송 대상 국가이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베트남에는 국제초특급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국제특급우편(EMS)'과 '국제초특급우편(EMS TCS)'을 같은 서비스로 보면 프랑스도 발송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이 문제는 대상 국가가 더 제한된 국제초특급우편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비스 명칭에 '초'가 있는지 확인한다. 국제초특급우편이면 일본·싱가포르·베트남을 발송 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그 밖의 국가는 일반 EMS 취급 여부와 분리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초특급 발송 대상은 '일·싱·베', 즉 일본·싱가포르·베트남이다.

NoteBase

문 8. 국제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반신우표권(International Reply Coupons)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한다.

②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 우편물은 선편, 항공 등의 부가취급을 할 수 있다.

③ EMS 배달보장 서비스는 제공된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절차를 거쳐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④ 국제초특급 서비스(International EMS Time Certain Service)는 배달결과를 배달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EMS 배달보장, 국제초특급 서비스의 기능과 취급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반신우표권: 외국의 수신인이 회신에 필요한 우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국제사무국이 발행·공급하는 증표이다.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IBRS): 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고객의 회신우편요금을 사후에 부담하도록 마련한 국제회신우편 서비스이다.
EMS 배달보장 서비스: 제시된 배달예정일까지 배달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을 배상하는 서비스이다.
국제초특급 서비스: 약속된 시간까지 신속하게 배달하고 최종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자동으로 알려 주는 정시배달보장 서비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국제반신우표권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발행하여 참여 우편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따라서 발행 주체를 국제사무국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② X — 틀린 부분은 '선편, 항공 등의 부가취급을 할 수 있다'이다.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물은 선편과 항공 중 부가취급을 선택하는 우편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선취급우편물 또는 보통항공우편물로 간주되는 회신우편물이다.
③ O — EMS 배달보장 서비스가 적용되는 우편물이 안내된 배달예정일보다 늦게 배달되면 지연 사실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을 배상한다.
④ O — 국제초특급 서비스는 배달기한을 엄격히 관리하며, 최종 배달결과를 발송인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발송인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수취인부담'이라는 명칭 때문에 발송 방법이나 여러 부가취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핵심은 누가 우편요금을 부담하는지와 해당 회신우편물이 어떤 우편물로 취급되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제도의 핵심 기능을 먼저 연결한다. 국제반신우표권은 회신용 우표 교환, IBRS는 사업자의 회신요금 부담, EMS 배달보장은 지연 시 우편요금 배상, 국제초특급은 정시배달과 배달결과 자동 통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신우표권은 국제사무국, IBRS는 회신요금 부담, EMS 보장은 지연 배상, 국제초특급은 정시배달·자동 통지이다.

NoteBase

문 9. 국제우편 행방조사청구제도와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 발송국가 및 도착국가는 물론 제3국(외국)에서도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방조사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 요건 중 하나이다.

③ 국제특급우편물 분실, 파손 등으로 지급된 손해 배상금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이며,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에게 청구 권한이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의 행방조사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요건·배상금 부담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일반 국제우편의 책임 원칙과 국제특급우편물의 배상금 부담 원칙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행방조사 =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국제우편물의 이동 경로와 현재 상태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자 = 우편물의 분실·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핵심 구분

행방조사는 발송국·도착국뿐 아니라 제3국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한 안에 행방조사를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요건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에게,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에게 있다. 한편 국제특급우편물의 손해배상금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행방조사는 발송국과 도착국은 물론 제3국에서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 행방조사 청구가 정해진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 국제특급우편물은 일반 국제우편의 책임 우정청 부담 원칙과 달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
- 틀린 표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부담한다.
- 올바른 표현: 국제특급우편물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

④ O
-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의 재산으로 보아 발송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이 청구권자가 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라는 표현은 일반 국제우편의 책임 원칙을 국제특급우편물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국제특급우편물은 배상금 부담 주체를 발송우정당국으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방조사 문제에서는 청구 가능 국가, 청구 기한, 청구권자를 먼저 확인한다. 손해배상금 부담 주체를 묻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종류가 국제특급우편물인지 확인하여 발송우정당국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행방조사는 발송국·도착국·제3국에서 가능하고, 국제특급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

NoteBase

문 10. <보기>와 같이 조건이 주어진 각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액면가와 가입금액은 1억 원, 만기는 1년으로 동일하며, 금리는 세전이율 기준이다.(단, 물가상승률은 1.60%이다)

ㄱ. ○○전자 회사채: 수익률 1.75%

ㄴ. ○○유통 회사채: 할인율 1.75%

ㄷ.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1.75%

① ㄱ은 ㄴ보다 표면금리가 높다.

② ㄱ은 ㄷ보다 실질금리가 높다.

③ ㄴ은 ㄱ보다 이자금액이 많다.

④ ㄴ은 ㄷ보다 수익률이 높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익률·할인율·이자율은 같은 1.75%로 표시되어도 계산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실제 이자금액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가와 가입금액은 모두 1억 원이고 만기는 1년이다.

ㄱ은 1억 원에 수익률 1.75%를 적용하여 만기에 수익을 더해 받는 회사채이다.

ㄴ은 액면가 1억 원에서 할인율 1.75%만큼을 미리 빼고 매입하는 회사채이다.

ㄷ은 가입금액 1억 원에 이자율 1.75%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이다.

세 상품의 표면에 표시된 금리는 모두 1.75%이고, 물가상승률은 1.60%이다.

사용할 공식

수익률 방식의 수익금액은 $I = F \times r$이다.

할인율 방식의 할인액은 $D = F \times d$, 매입금액은 $P = F - D = F(1 - d)$이다.

할인상품의 실제 수익률은 D/P이다.

정기예금의 이자금액은 가입금액×이자율이고 수익률은 이자금액/가입금액이다.

실질금리는 근사적으로 명목수익률-물가상승률이며, 정확한 피셔식은 $(1 + i)/(1 + \pi) - 1$이다.

수익률 방식과 이자율 방식은 주어진 1억 원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지만, 할인율 방식의 실제 투자금액은 액면가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ㄱ: 수익금액은 100,000,000 × 0.0175 = 1,750,000원이고 수익률은 1.75%이다.
ㄴ: 할인액은 100,000,000 × 0.0175 = 1,750,000원이고, 매입금액은 98,250,000원이다. 실제 수익률은 1,750,000/98,250,000 × 100 = 약 1.781%이다.
ㄷ: 이자금액은 100,000,000 × 0.0175 = 1,750,000원이고, 수익률은 1.75%이다.
ㄱ과 ㄷ의 실질금리는 근사적으로 1.75%-1.60%=0.15%로 같고, 정확한 피셔식으로도 모두 약 0.148%이다.

선지 판단

① X — ㄱ과 ㄴ에 표시된 표면금리는 모두 1.75%이므로 ㄱ이 더 높지 않다. 틀린 표현 'ㄱ은 ㄴ보다 표면금리가 높다'는 'ㄱ과 ㄴ의 표면금리는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ㄱ과 ㄷ의 명목수익률이 모두 1.75%이고 동일한 물가상승률 1.60%를 적용하므로 실질금리도 같다. 틀린 표현 'ㄱ은 ㄷ보다 실질금리가 높다'는 'ㄱ과 ㄷ의 실질금리는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ㄴ의 할인액과 ㄱ의 수익금액은 모두 100,000,000 × 0.0175 = 1,750,000원이므로 ㄴ이 더 많지 않다. 틀린 표현 'ㄴ은 ㄱ보다 이자금액이 많다'는 'ㄴ과 ㄱ의 이자금액은 같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ㄴ은 98,250,000원을 투자하여 1,750,000원을 얻으므로 수익률이 약 1.781%이고, ㄷ의 수익률 1.75%보다 높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④이다.

오답 포인트

1.75%라는 숫자만 보고 세 상품의 이자금액과 수익률도 모두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할인율은 액면가를 분모로 표시하지만 수익률은 실제 매입금액을 분모로 계산한다. ㄴ은 액면가보다 작은 98,250,000원을 실제로 투자하므로 표시 할인율 1.75%보다 실제 수익률이 높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금리의 분모를 확인한다. 수익률은 수익/실제 투자금액, 할인율은 할인액/액면가, 예금이자율은 이자/가입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자금액과 실제 수익률을 각각 비교한다. 실질금리 비교에서는 명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함께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같은 숫자라면 할인율은 액면가 기준, 수익률은 실제 투자금액 기준이다. 할인채의 실제 수익률은 할인율보다 높다.

NoteBase

문 1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②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의 보고대상에 대해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으며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보고된 혐의거래를 조사·수사하여 법집행기관에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의뢰한다.

④ 고객확인제도(CDD)의 확인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도 포함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금세탁의 의미와 단계,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역할, 고객확인제도(CDD)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금세탁은 불법재산의 출처와 소유관계를 숨겨 적법한 자금처럼 보이게 하는 과정이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제도이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금융기관이 보고한 의심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필요하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기관과는 역할이 다르다.
고객확인제도(CDD)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금세탁은 위법한 자금의 출처를 감추고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금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뜻한다.
② O —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정액 기준을 넘었는지만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아니다. 금융기관이 거래의 성격과 정황 등을 종합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조사·수사하여 법집행기관에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의뢰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된 의심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필요하면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실제 수사와 기소 등은 해당 법집행기관이 담당한다.
④ O — 고객확인제도(CDD)에서 말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일반 예금계좌뿐 아니라 양도성예금증서와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도 포함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정보 분석·제공'과 '조사·수사·기소'의 주체를 바꾼 선지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핵심 역할은 금융거래정보의 수집·분석과 법집행기관 제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관의 역할을 단계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금융기관은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며,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담당한다.

암기 포인트

금융기관은 보고, KoFIU는 분석·제공, 법집행기관은 수사·기소이다.

NoteBase

문 12. 우체국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않는다.

② 약관의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우선한다.

③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사고신고를 철회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④ 듬뿍우대저축에 대한 질권설정은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예금의 정리계좌 이자 처리, 약관의 적용 순서, 사고신고 철회 및 질권설정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규정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리계좌 = 장기간 거래가 없는 소액 예금 등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편입한 계좌이다.
질권설정 =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예금에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은 이자의 정기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관과 개별 합의가 다르면 개별 합의가 우선한다. 사고신고의 철회는 예금주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 정해진 방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않으므로 옳다.

② X
약관 조항이 개별 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의 개별 합의가 약관과 다르면 개별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틀린 표현: 약관의 조항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우선한다.
올바른 표현: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약관의 조항에 우선한다.

③ X
사고신고의 철회는 예금주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 정해진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전화 철회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전화로 사고신고를 철회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사고신고는 예금주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 정해진 방법으로 철회해야 한다.

④ X
듬뿍우대저축과 같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와 동의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표현: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으면 듬뿍우대저축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약관과 개별 합의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제시했고, ③에서는 사고신고와 그 철회 방법을 혼동하게 했으며, ④에서는 일반적인 질권설정 절차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체국예금 규정 문제에서는 대상 계좌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약관과 개별 합의의 우선순위, 사고신고 철회의 주체와 방법, 질권설정 가능 여부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리계좌는 정기이자 계산 제외, 개별 합의는 약관보다 우선, 입출금 자유예금은 질권설정 불가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2040$^{+\alpha}$자유적금의 저축한도는 계좌당 매분기 5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ㄴ. 기업든든 MMDA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이다.
ㄷ. 다드림 통장은 패키지별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추가 제공한다.(단, 베이직 패키지 제외)
ㄹ.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패키지종류에 상관없이 우대이율 연 0.2%p를 추가 제공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예금상품별 저축한도, 금리 적용 기준, 실적 우대이율, 가입자 우대이율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2040+α자유적금: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으로, 저축한도는 계좌당이 아니라 1인당 매 분기 5천만원 이내이다.
기업든든MMDA통장: 기업·단체·개인사업자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금리는 예치금액 구간을 중심으로 달라지며 단기 예치에는 별도 지급 조건이 적용된다.
다드림통장: 패키지별 가입·거래 실적에 따라 실적 우대이율을 적용하지만 베이직 패키지는 실적 우대이율을 제공하지 않는다.
새출발자유적금: 가입자 조건을 충족하면 패키지와 관계없이 가입자 우대이율 연 0.2%p가 적용되고, 패키지별 거래 우대 한도는 서로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ㄱ의 '계좌당'은 '1인당'으로 고쳐야 한다. ㄴ은 만기가 정해진 예금처럼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는 설명이 부정확하며, 올바르게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금액 구간을 중심으로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이다. 옳은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 ㄹ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2040+α자유적금의 한도 기준은 계좌당이 아니라 1인당 매 분기 5천만원 이내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③ X — ㄷ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기업든든MMDA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금리를 단순히 예치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상품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예치금액 구간 중심의 금리가 적용된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④ O — ㄷ과 ㄹ이 모두 맞다. 다드림통장은 베이직 패키지를 제외하고 패키지별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실적우대이율을 제공하며, 새출발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 충족 시 패키지 종류와 관계없이 가입자 우대이율 연 0.2%p를 추가 제공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계좌당'과 '1인당'을 바꾸어 읽기 쉽고, ㄴ의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앞부분만 보고 전체 문장을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ㄴ은 뒤의 금리 차등 기준까지 확인해야 하며, ㄷ의 베이직 제외 조건과 ㄹ의 공통 가입자 우대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은 ① 가입·저축한도의 기준 단위, ② 입출금 가능 여부, ③ 기본금리와 우대이율의 결정 기준, ④ 예외 패키지의 순서로 나누어 판단한다. 한 문장에 두 특징이 결합되어 있으면 둘 중 하나라도 틀릴 때 그 진술 전체를 X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2040+α는 1인당 분기 한도, 기업든든MMDA는 금액 구간, 다드림은 베이직 실적우대 제외, 새출발은 가입자 우대 연 0.2%p이다.

NoteBase

문 14.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는 가족카드 ·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전월 이용실적에 현금카드 사용금액, 주유실적은 제외된다.

② 우체국 우리동네plus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 Type 변경은 월 1회 가능하며, 변경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③ 우체국 다드림(多Dream) 체크카드의 할인 방법은 포인트 적립 방식이며, 5,000P 이상 시 1,000P 단위로 캐시백 전환도 가능하다.

④ 우체국 start 체크카드는 희망자에 한해 휴일재해보장보험 무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이후 카드를 해지해도 보험은 유지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별 발급 형태, 전월 이용실적 제외 항목, 부가서비스 변경 시점, 포인트 전환 조건, 무료보험의 유지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알뜰주유 체크카드는 주유 혜택에 특화된 카드로, 가족카드는 발급할 수 없고 교통카드는 신청할 수 있다.
우리동네plus 체크카드는 선택한 부가서비스 Type을 월 1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드림 체크카드는 할인 혜택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정해진 기준 이상 적립하면 캐시백으로 전환할 수 있다.
start 체크카드의 휴일재해보장보험은 희망자가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뒤 카드를 해지해도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가족카드 신청이 가능'이다. 알뜰주유 체크카드는 가족카드를 신청할 수 없고 교통카드는 신청할 수 있다.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는 현금카드 이용실적과 주유 할인 대상 이용금액이 제외된다.
② O — 부가서비스 Type은 월 1회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서비스는 변경 즉시가 아니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③ O — 다드림 체크카드의 할인 방식은 포인트 적립이며, 적립 포인트가 5,000P 이상이면 1,000P 단위로 캐시백 전환이 가능하다.
④ O — start 체크카드는 희망자가 휴일재해보장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교통카드 신청 가능 여부와 가족카드 신청 가능 여부를 한 문장에 묶어 혼동하게 한다. 교통카드는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카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문장 전체가 틀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선지에 발급 형태와 실적 조건이 함께 제시되면 각 내용을 분리하여 판단한다. '월 1회 변경·다음 달 적용', '5,000P 이상·1,000P 단위', '카드 해지 후에도 보험 유지'처럼 조건과 효력 발생 시점을 짝으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알뜰주유는 가족카드 불가, 우리동네plus는 월 1회 변경·익월 적용, 다드림은 포인트 적립·캐시백 전환, start 보험은 카드 해지 후에도 유지이다.

NoteBase

문 15. 우체국보험의 역사를 설명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우체국보험은 (㉠)년 5월에 제정된 '조선간이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과 (㉡)으로 시판되었다.
-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간이생명보험'이 (㉢)으로 개칭되었다.

	㉠	㉡	㉢
①	1925	양로보험	우편생명보험
②	1929	양로보험	국민생명보험
③	1925	연금보험	우편생명보험
④	1929	연금보험	국민생명보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보험의 출발 연도, 최초 보험 종류, 1952년 이후의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929년 5월: 「조선간이생명보험령」이 제정되었고,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으로 시작하였다.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과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간이생명보험이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은 1929, ㉡은 양로보험, ㉢은 국민생명보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1925'와 ㉢의 '우편생명보험'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1929년·양로보험·국민생명보험'이다.
② O — 1929년 5월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으로 시작하였고, 1952년 12월 간이생명보험이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다. 세 빈칸이 모두 맞다.
③ X — '1925·연금보험·우편생명보험'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1929년·양로보험·국민생명보험'이다.
④ X — ㉡의 '연금보험'이 틀렸다. 처음 함께 시판된 것은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이므로, 올바르게는 '1929년·양로보험·국민생명보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기 둘째 문장에 「우편연금법」이 등장하므로 최초 상품도 연금보험이라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1929년의 최초 보험 종류는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이고, 1952년의 개칭 명칭은 국민생명보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혁 문제에서는 '연도 → 당시 상품 → 뒤의 개칭 명칭' 순서로 빈칸을 대조한다. 이 문항은 '1929 → 종신·양로 → 1952 국민생명보험'의 연결이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1929 종신·양로, 1952 국민생명보험이다.

NoteBase

문 16.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②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③ 순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 재원(財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할 수 있다.

④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보험료 산정의 3대 예정률,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과 보험료의 관계, 순보험료의 구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정사망률은 장래의 사망 발생을 예상한 비율이고,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이며, 예정사업비율은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 비율이다.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운용수익을 더 많이 예상하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진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에 해당하며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뉜다. 보험료 산정에서는 3대 예정률과 함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리가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예상 운용수익이 줄어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가 필요하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예상 운용수익이 늘어 보험료가 낮아진다.

② O —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업 운영에 반영할 비용이 줄어 보험료가 낮아지고, 높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③ O —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며, 사망·질병 등의 위험보장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등의 재원인 저축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대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이다. 대수의 법칙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모아 실제 사고율이 예상치에 가까워지게 하는 원리이며, 특히 예정사망률 산정의 통계적 기반이 된다. 올바르게는 '보험료는 예정사망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을 기초로 하여 수지상등의 원리에 따라 계산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리'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대수의 법칙이 보험제도의 통계적 기반이라는 사실만 보고 보험료 계산 원리까지 그대로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정이율은 보험료와 반대 방향, 예정사업비율은 보험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또한 '다수의 위험을 모아 사고율을 안정시킨다'는 대수의 법칙,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경비 지출의 균형을 맞춘다'는 수지상등의 원리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이율↑ 보험료↓, 사업비율↑ 보험료↑, 보험료 계산은 3대 예정률과 수지상등의 원리이다.

NoteBase

문 17.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의 최초계약 가입나이는 0~60세이다.

② 무배당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은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이 지급된다.

③ 무배당 우체국장제보험 1종과 2종은 계약심사 과정 없이 가입이 간편한 무심사형 보험상품이다.

④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수익률을 증대시킨 보험상품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보험상품별 가입나이, 만기 생존급부, 계약심사 방식, 보험료 수수료 우대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심사형은 건강진단 등 일반적인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가입 편의성을 높인 유형이고, 심사형은 피보험자의 위험을 심사한 뒤 계약 인수 여부와 조건을 정하는 유형이다. 우체국장제보험은 1종이 무심사형, 2종이 심사형이므로 두 유형을 모두 무심사형으로 묶을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의 최초계약 가입나이는 문항의 상품 기준으로 0~60세이므로 옳다.

② O — 무배당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은 10년 만기 갱신형이며, 각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생존하면 건강관리자금이 지급되므로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1종과 2종은 모두 무심사형'이다. 올바르게는 우체국장제보험 1종은 무심사형이고 2종은 심사형이다.

④ O —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기본보험료 중 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낮춰 적립 효율과 수익률을 높인 상품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입이 간편한 장제보험'이라는 공통 이미지 때문에 1종과 2종을 모두 무심사형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유형 번호별 계약심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에서 '1종과 2종 모두'처럼 여러 유형을 한꺼번에 단정하면 유형별 차이를 먼저 확인한다. 장제보험은 1종 무심사형, 2종 심사형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제보험은 1종 무심사, 2종 심사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의 우체국 보험상품 중 보장성보험 상품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②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무배당 하나로OK보험,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③ 우체국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
④ 우체국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보험 상품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장성보험은 사망·질병·상해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기능이 중심인 보험이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만기자금이나 이자 수익을 마련하는 기능이 중심이다. 이 문항에서는 상품명의 인상보다 공식 상품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우체국안전벨트보험과 만원의행복보험은 보장 기능을 가진 상품이지만, 알찬전환특약은 저축성 상품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알찬전환특약'이며, 이를 '우체국하나로OK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면 보장성보험만의 조합이 된다.

② O —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은 교통재해·상해를 보장하고, 하나로OK보험과 100세종합보장보험도 질병·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세 상품이 모두 보장성보험이므로 옳다.

③ X — 우체국암보험(갱신형)과 나눔의행복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에버리치복지보험은 저축성보험이다. 틀린 표현은 '에버리치복지보험'이며, 이를 '100세종합보장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된다.

④ X — 우체국암보험(갱신형)과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에버리치복지보험은 저축성보험이다. 틀린 표현은 '에버리치복지보험'이며, 이를 '우체국안전벨트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복지’, ‘행복’, ‘전환’처럼 상품명에 들어간 일반적인 단어만 보고 보험 성격을 추측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①의 알찬전환특약과 ③·④의 에버리치복지보험은 저축성 상품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상품을 하나씩 보장성 또는 저축성으로 분류한 뒤, 저축성 상품이 하나라도 섞인 선지를 제외한다. 이 문항에서는 알찬전환특약과 에버리치복지보험이 들어간 선지를 먼저 제거하면 ②만 남는다.

암기 포인트

안전벨트·하나로OK·100세종합보장은 보장성, 알찬전환특약·에버리치복지는 저축성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A가 B의 수표를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지 못하는 이유는?

A: How can I help you?
B: I received a bank draft from Malaysia. And I want to exchange it in Korean currency.
A: Which currency is the draft?
B: It is 20 US dollars.
A: Sorry, sir. We can't exchange it right now.
B: Why is that?
A: We have to mail it to the issuing bank and once they pay, we will credit the amount in your account.
B: How long does it take for me to get the money?
A: It will take a week or so.
B: All right. I'll check my account then. Thanks.

① 수표에 표시된 화폐의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발행은행에 수표를 보내서 결제 받은 돈을 입금해 주기 때문이다.
③ B의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래의 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④ 수표 금액이 적어서 우편료와 수수료의 발생으로 거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국에서 발행된 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추심한 뒤 계좌에 입금하는 이유를 대화의 근거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B는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미화 20달러 표시 수표를 원화로 바꾸려 한다. A는 수표를 발행은행에 우송하고, 발행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면 B의 계좌에 그 금액을 입금한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는 약 일주일이 걸린다.

핵심 개념

외화수표의 추심은 수표를 발행은행에 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회수한 뒤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기 전에는 수표를 바로 현금으로 바꾸어 줄 수 없다.

NoteBase

적용 기준

대화 속 직접적인 이유를 확인한다. A의 말인 '발행은행에 수표를 보내고, 그 은행이 지급하면 계좌에 입금한다'가 판단 기준이므로 발행은행의 결제와 추심 절차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화에는 수표 표시 화폐의 잔고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없다. 틀린 표현인 '화폐의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은 '발행은행에서 수표 대금을 결제받아야 하기 때문'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A는 수표를 발행은행에 우송하고 발행은행이 지급한 뒤 그 금액을 B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설명한다. 즉, 추심을 통해 결제받은 돈을 입금해야 하므로 즉시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다.
③ X — B의 개인 신용등급이나 거래 승인 여부는 대화에 제시되지 않았다. 틀린 표현인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서'는 '발행은행의 결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로 고쳐야 한다.
④ X — A는 소액이라 우편료와 수수료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인 '금액이 적어 비용 때문에 거래가 어렵다'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발행은행의 결제 후 계좌에 입금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20달러라는 소액이나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수표라는 사실에 끌려 잔고 부족, 신용등급, 수수료 문제를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의 근거는 추측이 아니라 A가 명시한 '발행은행에 우송 → 발행은행의 지급 → 계좌 입금'의 순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형 금융 문항에서는 직원이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먼저 찾고, 각 선지가 그 문장의 주체·행위·처리 순서와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본 문항에서는 발행은행의 지급이 계좌 입금보다 앞선다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외화수표는 발행은행에 추심하고, 결제 확인 후 고객 계좌에 입금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은?

The connectedness of words to real people and things, and not just to information about those people and things, ① has a practical application that is very much in the news. The fastest-growing crime in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is identity theft. An identity thief uses information ② connected with your name, such as your social security number or the number and password of your credit card or bank account, to commit fraud or steal your assets. Victims of identity theft may lose out on jobs, loans, and college admissions, can ③ turn away at airport security checkpoints, and can even get arrested for a crime committed by the thief. They can spend many years and much money ④ reclaiming their identity.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분사의 수식 기능, 능동·수동의 구별, spend 구문의 형태를 문맥에 맞게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사의 태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지, 동작을 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떤 조치를 당하면 수동태인 be동사 + 과거분사를 사용한다. 또한 과거분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고, spend는 시간·돈 + 동명사 형태로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문장의 주어는 단수 명사 The connectedness이므로 단수 동사 has가 알맞다. 중간의 of words to real people and things와 and not just to information about those people and things는 주어를 수식할 뿐 동사의 수를 결정하지 않는다.

② O — connected with your name은 '당신의 이름과 연결된'이라는 뜻의 과거분사구로, 앞의 information을 뒤에서 수식하므로 알맞다.

③ X — 틀린 표현은 turn away이다. 신원 도용 피해자들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다른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출입을 거부당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필요하다. 올바르게는 can be turned away at airport security checkpoints이다.

④ O — spend + 시간·돈 + 동명사는 '~하는 데 시간·돈을 쓰다'라는 뜻이다. many years and much money가 목적어이고 reclaiming이 그 시간과 돈을 들이는 행동을 나타내므로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turn away를 단순히 '돌아서다'로 해석하면 오류를 놓치기 쉽다. 이 문맥의 turn someone away는 '누군가의 출입을 거부하다'라는 타동사 표현이며, 피해자는 그 조치를 당하는 대상이므로 be turned away가 되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동사의 태를 판단할 때는 주어가 그 행동의 행위자인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피해자들이 보안 검색대에서 출입을 거부당한다'처럼 주어가 동작을 당하면 be동사 + 과거분사의 수동태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turn someone away는 '누군가의 출입을 거부하다', be turned away는 '출입을 거부당하다'이다.

NoteBase